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을 위하여 2006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조 레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출연금액 : 5,205,060천원
 - 인건비 1,767,295천원(성과급 134,848천원 포함). 경비 776,765천원, 사업비 2,600,000천원, 자본지출 51,000천원, 예비비 10,000천원

나. 주요사업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혁신과 서울시센터 역할 고도화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혁신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
 - 서울지역 자원봉사 정책개발 과제 연구 및 이슈중심의 국제교류·협력
- 시민참여 인프라 조성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자원봉사 홍보·캠페인
 - 지역과 연계하는 기업네트워크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
- 청년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 “동행” 사업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
 - 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부심과 자기 성장 지원
 - 수요처 확대 및 봉사활동 다양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대학생 자원봉사 리더 양성 교육 운영, ‘동행’의 브랜드화 및 홍보 활동 전개

나. 출자·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사활동의 민·관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확산시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윤희문 (☎ 2133-5829)